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 상품명 : 정기예금
- 상품특징 : 거치식 예금으로서 기간에 따른 확정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 기업고객의 경우, 계좌개설 확인서 내용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법인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서울지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 해지 : 서울지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단위 또는 일단위)	
이자율	예금개설일 당시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경과시 보통예금 이자율 (http://mail.hsbc.com.hk/kr/PWS_daily/kr/copinterest_rate.htm)	
	1개월 이상 경과시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	
	예치기간	이자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

	1개월 이상	약정이자율 * 경과일수 / 계약 일수
	단, 중도해지이자율이 보통예금 이자율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	
만기 후 이율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 - 만기후 1개월 미만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0% -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 - 만기후 3개월 이상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원금 및 이자지 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 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예금 해지시 불 이익	만기전 예금해지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연계·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 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재예치	가능	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양도 및 담보제 공	가능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 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 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 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 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p>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 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 용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 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 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p>	

계약해지방법	서울지점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휴면예금 및 출 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 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기업자금관리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심사역(RM), 고객관리담당자 또는 기
업자금관리부 (hsbc.korea.gps@kr.hsbc.com 또는 02-2004-0168)을 통해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